

束草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1994. 12. 5.

내 무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년 11월 26일 속초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11월 28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
('94. 11. 29) 상정,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신부웅)

가. 제안이유

물품관리에 있어 물품매입요구, 불용품 감정액 상향 조정,
비품구분 기준의 취득단가 조정등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·도
공통 건의사항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
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물품매입등의 요구(안 제8조)
관서당 경비로 물품매입, 수리,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
품의요구 단서를 삭제
- 불용품의 매각 (안 제17조)
불용품 처분시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
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단가 1천만원으로 불용품 감정
액 상향 조정
- 물품출납원의 장부 (안 제24조제1항)
물품출납원 비치장부 5종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

-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(안 별표 1)

품종구분 기준중 비품에서 취득단가가 5만원을 10만원으로 함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없 음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(답변자 : 회계과장 신부웅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소모품대장 삭제시 낭비요인이 크다고 보는데?	○ 소모품 사용시 장부기록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었으나, 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것이므로 낭비요인 없음.
○ 불용품 처리시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1천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한 불용품 감정여부?	○ 감정을 하면은 감정수수료도 들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불용품은 조정위원회 의 심의후 처분

5. 討論 要旨 : 없 음

6. 修正案 要旨 : 없 음

7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8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음

9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음

붙 임 :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4. 11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물품관리에 있어 물품 매입요구, 불용품 감정액 상향 조정, 비품 구분 기준의 취득단가 조정등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·도 공통건의 사항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물품을 매입, 수리, 제조할 때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하며,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 요구를 삭제. (안 조례 제 8조)
- 불용품을 처분시 총중량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단가 1천만원으로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 (안 조례 제 17조 제 4항)
- 물품출납원 비치장부 5종중 법정장부 "소모품대장"을 삭제 (안 조례 24조 제 1항)
- 물품의 비품구분기준중 내용연수가 1년미만인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 (안 조례 별표 1)

속초시조례 제 호

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4항중 "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" 을 "1천만원"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한다.

[별표 1]의 품종구분기준량중 (1) 비품중 "5만원"을 "10만원"으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8조 (물품매입등 요구) 물품을 매입·수리·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·수리·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·수리·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	제8조 (물품매입등 요구)	----- ----- ----- ----- (삭제)	
제17조 (불용품의 매각)		제17조 (불용품의 매각)		
① - ③ (생략)		① -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<u>5백만원</u>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'감정기관'이라한다)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		④ ----- ----- ----- <u>1천만원</u> ----- ----- -----		
⑤ - ⑧ (생략)		⑤ - ⑧ (현행과 같음)		
제24조 (물품출납원의 장부) (생략)		제24조 (물품출납원의 장부) (현행과 같음)		
1. 비품수입및 출납원장 2. 비품출납및 운용카드 3. 물품카드 등록부 4. <u>소모품 대장</u> 5. <u>도서대장</u>		1. ----- 2. ----- 3. ----- 4. <삭 제> 5. -----		
【별표 1】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		【별표 1】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		
○ 물품의 종류 (생략)		○ 물품의 종류 (현행과 같음)		
○ 품종구분 기준		○ 품종구분 기준		
(1)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<u>5만원</u> 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		(1) 비 품 ① ----- ----- ② ----- ----- <u>10만원</u> ----- ③ ----- -----		
(2) 소모품 (생략)		(2) 소모품 (현행과 같음)		